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1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김영호·김용민·맹성규

안규백 · 정청래 · 이병훈

황운하 • 이탄희 • 아수진비

윤미향 · 정성호 · 강훈식

박성준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,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, 공동주택 출 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,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있음.

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,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, 공동주택 내의 소방,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긴급자동차의 출입 협조 등) ① 관리주체는 소방,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(이하 이 조에서 "긴급 자동차"라 한다)가 공동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등록 번호를 등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나목에 따른 구급차
- 3.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 교통단속,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- ② 관리주체는 소방공무원, 응급의료종사자, 경찰공무원 등 소방,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방,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자동차 등록 현황을 소방서장, 응급의료기관의 장,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

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등록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출입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| 개 정 안   |
|--------------|---|
| 현 행<br><신 설> | 개 정 안 제20조의3(긴급자동차의 출입 협 조 등) ① 관리주체는 소방,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자동차(이하 이조에서 "긴급자동차"라 한다)가공동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를 하여야한다. 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나목에 따른 구급차3.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교통단속,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|
|              | 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   |

지안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긴급자동차 등록 현황을 소방서장, 응급의료기관 의 장,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 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주 체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의 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 록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출입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